고창황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의주자모집공교일 : 2022.04.29)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신청 안내] 및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4.29.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4.29)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고창군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합니다.
-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1. 건설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255-1번지 일원 영구임대 30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 | | 세대별 계약면적(m²) | | | | | 모집호수 | | | | | |
|-----|-----|--------------|---------|----------|------|---------|------|----|----|-----|-----------------------|--------|
| 공급 | 세대수 | | 주거 | 그 밖의 | 공용면적 | | | 우선 | 일반 | 해당동 | 구조 및 | 입주 |
| 형별 | | 전용 | 공용 | 기타 공용 | 주차장 | 합계 | 계 | 공급 | 공급 | | 난방 | 예정일 |
| 24A | 30 | 24.997 | 11.6302 | 4.6887 | - | 41.2889 | 30 | 3 | 27 | 103 | 철근콘트리트 벽식 /개별난방 | '23.09 |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이며. 국민임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인터넷 청약은 불가하며,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기 비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24형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빌트인으로 설치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 | | | 임대조건(원) | | | | TI 항 크 L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 | |
|-----|-----------|----------------|---------|-----------|--------|-----|-----------------|-------------|---------|--|
| 공급형 | 구분 임대보증금 | | | | 월임대료 | | 전환가능 금한도액(원) | 임대보증금(원) | 의이네크(이) | |
| | TE | 계 | 계약금(5%) | 잔금(95%) | 걸음네표 | | | 함네포증요(전) | 월임대료(원) | |
| | 「가」군 | 2,240,000 | 112,000 | 2,128,000 | 11 510 | (+) | 2,000,000 | 4,240,000 | 34,540 | |
| | · > [1] 正 | 2,240,000 | 112,000 | 2,120,000 | 44,540 | (-) | 1,000,000 | 1,240,000 | 46,620 | |
| 24A | 「나」군 | 군 9,861,000 49 | 404.000 | 9,367,000 | 83,450 | (+) | 10,000,000 | 19,861,000 | 33,450 | |
| | | | 494,000 | | | (-) | 7,000,000 | 2,861,000 | 98,030 | |

-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2022.04.29)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해야 합니다.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4.29.)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고창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 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 | | |
|-----------------------|--|--|--|--|--|
| • 신청자 | | | |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 | |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 | | |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 | | | |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 | | | |
|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사람에 한함 | | | |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선정시좌 세대물 구인등목표등본경에 함께 등세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 |

-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 만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u>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구성원</u>을 포함
-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 <u>단</u>,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 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임대주택에 입주또는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리 시에도 중복입주로 간주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 | | | | | |
|------------|---|--|---------------------------------------|--|--|--|--|--|--|
| |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100%(1인 120%, 2인 11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 | | | | | | | | |
| 소득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50% 이하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 | | | |
| – . | 1인가구 | 2,248,479원 이하 | 2,890,901원 이하 | 3,854,536원 이하 | | | | | |
| | 2인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5,328,807원 이하 | | | | | | | | |
| | 3인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 | | | | | | | |
| | 4인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 | | | | | | | |
| | 5인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 | | | | | | | |
| | 6인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779,825원 이히 | | | | | | | | |
| | 7인가구 | 4,116,789원 이하 | 5,763,505원 이하 | 8,233,578원 이하 | | | | | |
| | | ll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세전금액 으로서 해당세대의 월 | | | | | | | |
| | 차목(일반입주 | 용 신분 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ㅂ 자), 타목(2순위 장애인) |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 | 동복지시설퇴소자), | | | | | |
| 자산 |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200만원 이하 | | | | | | | | |
| |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자산기준에 포함되나, 총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검증함. | | | | | | |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구 | ·분 | 산정방법 |
|-----|----------|--|
| | 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 총자산 |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 기타 자산 |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자동차 | |
|--|-----|--|
|--|-----|--|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우선공급 배정호수

■ 우선공급 배정호수

| | | | 우선공급 | | | | | | | |
|-------|--------|------|------|------|---|------------------------------|--------|------|--------------|--|
| CLTIM | 병 공급형별 | 공급형별 | 공급형별 | 공급형별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 | | | |
| 단지명 | | | | | 계 | 가목 | 나목 | 다목 | 마목 | |
| | | | | | | 국가유공자등 | 귀환국군포로 | 신혼부부 |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자 | |
| 고창황산 | 24A | 3 | 1 | 1 | 1 | 별도배정 호수 없음 (다목 공급 후 잔여호수) | | | | |

-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인 자」는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마목(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됩니다.
- ※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 자**는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가. 우선공급

■ 우선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 대상자 | 입주자격 | 임대조건 |
|-----|---|--|
| 가목 |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기군 ·수급자선정기준액 |
| 나목 | -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 초과인 사람: 「나군 |
| 다목 |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 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 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인 생계·의료급 여수급자 | 「가」군 |
| 마목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가」군 |

※ 우선공급 대상 중「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국가유공자등, 귀환국군포로 등'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에 적용

| | | | <u> </u> | 박극결합시행하석 결 | #3 세25 | <u> 2 기국, 나국에 작용</u> |
|-------|----------------|------------------|----------|-----------------|--------|----------------------|
| | | 입주자 선정순서 | 1 | | | |
| 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 | 추첨 |

② '신혼부부'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 공공주택특벽번시행규칙 벽표3 제2호 다모

| ② '신온무누 | 구신공급 1 | 갑수사 선정방법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 | | | |
|-------------|--|---|--|--|--|--|--|
| 구 분 | | 입주자 | 선정방법 | | | | |
| 입주자 선정순위 | ① 1순위 : 가)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자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 | | |
| 유의사항 | * 예비신혼부부의 1인을 말하며 * 예비신혼부부의 세대별 주민등 명서 추가 제를 세대구성원 입양 제출 또는 허위 - 임신부부 출 (단, 입주지정 - 입양부부 입양 * 주택청약종합저를 아래 조회방법에 * 주택청약종합지 아래 조회방법에 * 주택청약종합지 바가 신청서류 | 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에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를 만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기임신,불법낙태,입주 전 파양사실이 판명되었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자 이 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자의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학 납입 횟수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범축 납입 횟수로 배점을 받으시려는 강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 주택명 : 고창황산 영구임대를 장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 주택명 : 고창황산 영구임대를 장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 주택명 : 고창황산 영구임대를 참석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 반련 진단서 등 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 으로 선정하오니 | | | | |
|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
| 입주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신혼부부)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 중인 경우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
| 선정순위 | ① 1순위: 자녀 수가 많은 자② 2순위: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나. 일반공급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순위 | 내용 | 임대조건 |
|-----|--|--|
|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
| |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가」군 |
|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 |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u>영구임대주택의</u> <u>자산요건을 충족</u> 하는 북한이탈주민 | · 수급자선정기준액 |
| 1순위 |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u>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u> 하는 사람 |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 | 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u>수급자 선정기준의</u>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 |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u>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u> 한 사람 |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
| |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초과인 사람 : 「나」군 |
| |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 수급자선정기준액 |
| 2순위 |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이하인 사람 : 「가」군 |
| |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69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u>우선공급 시 일반공급에서 동법 시행규칙</u> [별표 3] 1호의 나목(국가유공자 등)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방법

| _ 0 | | | | | |
|---------------------|----------------|------------------|---------------|---------------|----|
| | | 입주자 선정순서 | | | |
| 배점 합산 (배점기준표 참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자 | \Rightarrow | 추첨 |

다. 공급형별 배점기준표

①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신혼부부 제외) 배점기준표

| 7.4 | | 배점 | | | |
|---|-----------|------------------------|---|---|--|
| - | 구분 | 100점 | 배점기준(대상자) | | |
| | 1년 미만 | 22 | | | |
| 4 7 5 17 71 5 7171 | 1~5년 미만 | 24 | > 미지이크브린 연소성성 전부 그하고에 기조기가 | | |
| 1. 고창군 거주기간 (30점) | 5~10년 미만 | 26 | ▶ 모집일로부터 연속하여 전북 고창군에 거주기간 (전북 고창군에 최종 전입한 날로부터 기간 산정) | | |
| (30 🗇) | 10~15년 미만 | 28 | (단축 포증단에 되증 단답한 글로구나 기단 단증) | | |
| | 15년 이상 | 30 | | | |
| | 40세 미만 | 19 | | | |
| 2. 신청자 연령 | 40~50세 미만 | 21 |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생년월일 기준 | | |
| (25점) | 50~60세 미만 | 23 | ▶ 구진중국표에 기세진 정신율을 기준 | | |
| | 60세 이상 | 25 | | | |
| | 1~2인 | 24 | | | |
|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 본인제외) | 3인 | 26 | > ㅁ즈테넴데그서의이 범이어 두이성 시청되경 차조\ | | |
| (전경자 논인제되) | 4인 | 28 |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3. 신청자격 참조) | | |
| (30 🖹) | 5인 이상 | 30 | | | |
| | 32 10 | | 15 (유형 3가지) 13 | |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 | | (유형 2가지) |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 |
| | | 11 (유형 1가지) |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항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 | |
| 4. 가점(최대 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 |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 | 7 |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항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 |

②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 구분 |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
| | 미서は 되ける | 3점 | 3명 이상 |
| |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 2점 | 2명 |
| | (-11-1 12) | 1점 | 1명 |
| | | 3점 | 3년 이상 |
| | 고창군 연속 거주기간 | 2점 | 1년 이상 3년 미만 |
| 1, 2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 | | 1점 | 1년 미만 |
| 급구시 전경 (동점 시 추첨) | スロカハスシエス | 3점 | 24회 이상 |
| (01 111)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
| | | 1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
| | | 3점 | 3년 이내 |
| | 혼인기간 | 2점 | 3년 초과 5년 이내 |
| | | 1점 | 5년 초과 7년 이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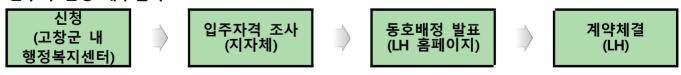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입주대상자 발표 동호배정 발표 | | 계약체결 |
|------|----------------------|----------------------------|---|---|
| 우선공급 | '22.05.09(월) ~ | `2022.08.17(수) | 전자계약 | '22.08.29(월) 10:00 ~ '22.08.31(수) 17:00 |
| 일반공급 | 05.13(금) | (17:00 이후) | 현장계약 | '22.08.31(수) 10:30 ~ 15:30 *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
| 장 소 | 고창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LH청약센터 (apply.lh.or.kr) |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현장계약 일지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안내예정 | |

- * 신청접수는 공급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간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 *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일은 자격검색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합니다.
- * 계약체결안내문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 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u>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u>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기준」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 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구 분 | | 안 내 사 항 |
|------------|--------------|------------------------------------|
| 동의서 수집 사유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 시경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u>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u>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04.29) 이후 발행분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4.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 구비서류 | 비고 | 부수 |
|----|------------------------|--|--------------|
| | 영구임대주택 |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 1통 |
| | 공급신청서 |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별지1호) |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 • 내용확인 후 신청자가 서명하여 제출 | 1통 |
| | 불가사항 확인서 | HOAL I CONTINUE | (별지2호) 1통 |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
| | 제3자 제공 동의서 |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별지3호) |
| | 금융정보 등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
| 공사 |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별지5호) |
| 양식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
|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 1통 |

| |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
| (전부표기) |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
|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 1통 |
|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10 |

■ 신청자격 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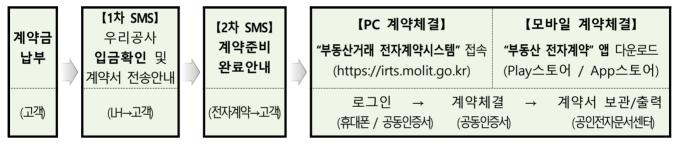
|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행정복지센터 |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앙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 동복 지시설 |
| | 귀환용사증 사본 | 국방부 |
| 신혼부부 우선공급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예비신혼부부 우선공급 |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 (공사양식),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입주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필수제출) | 각 1통 (별지6, 6-2호 포함) |

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2.08.17(수)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충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통보해드립니다. 주소 및 전화 번호 변동 시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으로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계약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당첨자 및 예비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u>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u>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계약기간 : 2022.08.29.(월) ~ 08.31(수)]
 - 전자계약 [기간 : 2022.08.29.(월) 10:00 ~ 2022.08.31(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 ※ <u>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u>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 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

- 현장 계약 [기간 : '22.08.31(수) 10:30 ~ 15:30 *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 현장계약은 코로나19 진행상황 및 정부 및 지자체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계약 장소 및 방법 등은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 배우자 |
|---|---|
| • 계약자 도성(*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제출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 및 |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 대리인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 |

8.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공급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간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

| 그ㅂ | O ol ılà |
|---------------|--|
| 구분 | 유의사항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 (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 사항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입주 시 잔금,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지구 및 단지 여건 | ■ 단지 외부여건 고창읍 공용버스터미널과 고창군청이 약3.5km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261(고창문화터미널→대산종점) 시내버스노선이 있으나 운행이 적은 노선이며, 고창공용 버스터미널에서 사업지까지 대중교통으로 약25분정도 소요됩니다. 고수면 사무소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수면 보건지소가 인접해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고창담양 고속도로가 2.5km이내에 있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대지 남측으로 하천과 접하고 있고, 북측으로는 산업단지가 접하고 있으며, 북동측으로는 농공단지,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으니,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

구분 유의사항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분양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 주차장에 인접한 세대는 진입차량 불빛,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관리사무소, 복합커뮤니티센터, 경로당 등이 있으며 이에 내부 시설물(비품, 가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동 102동과 103동사이 전기실/발전기실, 펌프실, 저수조, 환기탑 등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분진, 진동, 환기 등이 세대로 영향(전달)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및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아파트 동의 경우 이삿짐 차량(사다리차)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옥외쓰레기수거함 및 선별보관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일부 세대에 쓰레기로 인한 냄새, 벌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거 당일 지상주차장 일부가 일시 사용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지상변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해 단지는 도시가스 시설이 없으며, 단지 내 가스공급을 위한 공동 LPG 저장소설치에 따른 미관 저해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상 주차장, 단지 외 도로와 단지 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이 없으므로 지상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일 (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법정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소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 결 전 현장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동별, 충별, 호별 입면의 돌출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전후면에 소방 에어매트 설치구간에는 교목(키큰 나무) 식재 불가합니다.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문,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 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 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주차장이 없고 지상주차장으로만 계획되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복합커뮤니티센터, 경로당 등과 인접한 일부동 저층세대의 경우 인근 부대시설의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미관 저해,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팸플릿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 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 수준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 번호,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특히 벽걸이 TV설치시 주의 요함)
- 펌프실, 저수조실, 전기/발전기실은 단지 내 별도의 시설로 지하에 설치되어 있으나 장비류 가동시 소음,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발코니 섀시의 개폐방향은 홍보물에 적용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용홀 창호인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고정창 (일부 프로젝트 창)으로 시공됨을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 최고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5층 규모입니다.
- 주차대수는 지상 총 116대 입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2동 옥탑에 공청안테나, 위성수신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101동,102동,103동 지붕층에는 태양광시설이 설치됩니다.
- 태양광 발전시설물을 통해 공용전기요금이 절감되거나, 절감금액 범위내에서 일부가 유지관리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위 내 엘리베이터 및 기계실, 등의 작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범용 CCTV는 승강기 내부,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1층 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원격검침은 2종 (전기,수도)입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시스템이 단지 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소음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팸플릿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단지특화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 가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세대 내부 에어컨은 발코니 외부에 실외기 설치공간만 제공하고, 매립형 냉매배관은 제공하지

| 구분 | 유의사항 |
|----|---|
| | 않습니다. |
| |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 |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 • 싱크대 하부는 냉,온수 분배기 및 난방분배기의 주위배관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 |
| | 기는 부적합니다. |
| |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
| | 다소 소음이 날 수 있으며, 내부에 빨래 건조대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 • 냉장고 설치부위에 급수배관 및 배수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 • 식탁용 조명기구(주방보조등)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
| | 위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26m²A,B, 33m², 46m² 타입에 설치되며, 24m² 타입에는 미설치) |
| | • 영구임대 세대에 한하여 세대내 벽걸이에어컨이 제공됩니다. |
| | |
| | ■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 | • 신설학교 개교시기·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입주자께서 미 |
| | 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 주택성능등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9호 의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구 분 | 적용 여부 | 구 분 | 적용 여부 |
|---------|-------|-----------|-------|
| 측벽 | 적 용 | 바닥(층간바닥) | 적 용 |
| 외벽(직접면) | 적 용 | 대기전력차단스위치 | 적 용 |
| 외벽(간접면) | 적 용 | 일괄소등스위치 | 미적용 |
| 창호(간접면) | 적 용 | 고효율조명기구 | 적 용 |
| 지붕 | 적 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 용 |
| 바닥(간접면) | 적 용 | 절수설비 | 적 용 |
| 고효율설비(7 | 적 용 | | |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
| 고창황산 1블록 | 한국토지주택공사 (418-82-06818) | 이수건설(주) | |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

1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구분 | | 설치항목 | 제공대상 |
|-------|-------------|---------------------------------------|-------------------|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 |
| | 단차 없애기 |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 |
| | 출입문 규격확대 및 | 출입구 폭 80㎝이상 | |
| | 방향 조정 |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 |
| 욕실 | 좌식 샤워시설 |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 |
| (1개소에 | 작식 사취시골 | (L자형 1개, —자형 1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
| 한함) | 좌변기 | 지병기 병명에 아저스자이/(되청) 성기 | 지체.뇌병변장애인, |
| | 안전손잡이 |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 |
| | 수건걸이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 6 M 2 B M 6 B M D |
| | 높낮이조절 세면기 |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 |
| 주방 | 좌식 씽크대 |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 |
| T 6 | 가스밸브높이조정 |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
| | 야간센서등 |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 |
| 거실 | 비디오폰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
| | 시각경보기 | 세대내 1개소 설치 | 청각장애인 |
| 기타 | 음성유도 신호기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시각장애인 |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u>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u> 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12.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ː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 (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 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 (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q) 이하인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 score) 평가 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 score) 평가 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 • 요루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 가. 성인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 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3.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3. (분양권 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 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m² 이하의 주택(20m²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 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 | ·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 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 | 근로 소득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소득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
| | 사업 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 |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 재산 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 국세청 종합소득 |

| | | | 발생하는 소득 | |
|------|--------|-----------------|---|---|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I to the second |
| |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
| | 반 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 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지방세정 자료 |
| | | 선박·항공기 |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
| | | 입목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
|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
|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
|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직권조사 등록 |
| 금융재산 | | ·재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기관 |
| | |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
| | 부 | ' 채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직권조사 등록 |
| | | | 임대보증금 | 직권조사 등록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
|------|--------------------------------|
| শ্বশ |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15. 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

| 문의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중식시간 12-13시 제외 운영) |
|---------|---|
| 리플렛 배부처 | · 고창군 관내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4. 29.

전 라 북 도

고 창 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 | | | 여: | 구임대주 | 택 공급 | 신청서 | | | | 접 | 수번호 | |
|------------------|---|---|--|---|---|---|-------------------------|---|-------------------------------|---------------------------------------|-------------------|-------------|
| 주택 | | | <u> </u> | 1 411 | 100 | | | | | | | |
| - 신청 유형 | | 단지명 | | 고창황산 영 | 구임대주택 | 주택형 | | □24A | 가구 | 원수 | | |
| | |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11+101 | : | 주 소 | | | 시 구 | 1 동 | 5 | 번지 | 호 | | | |
| 신청인 | 전 | 현화번호 | 5 | 휴대전화() 집 전 화() | - - | | | 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 | | 년 | 월 | 일 |
| 신청 순위 | □(시행규칙 별표3 2호 가목)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90%, 2인 80%) 이하인 자 □(시행규칙 별표3 2호 다목) 수급자로서 혼인 중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 자녀가 있는 자 (□ 1순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자녀 경우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혼인신고일() ② 미성년(만19세미만,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자녀수 ()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거주여부 (| | | | | | | | | ·의 70% 나 6세 자녀가 (<u>)</u> | %(1인 이하 | |
| | 한 그 일 공 | 1순위 | □ 만 ※ 분 7 0 전 ở ở 등 | 남동복지시설에서 1:65세 이상으로서, 3:한이탈주민, 장○ 0%(1인 90%, 2인 1:년도 도시근로자 5:족한 사람 1:토교통부장관 또· 1:당애인등록증 교부· 인 110%) 이하이 | 국민기초생활보 배인, 아동복지시 80%) 이하이고 · 가구당 월평균 는 시·도지사가 된 사람으로서 전 | 장법 상 수급 설 퇴소자는 , 자산요건 -소득 50%(1 영구임대주택 -선년도 도시근 | 급권지 는 전 충족 인 7 | 자 또는 차상위기 년도 도시근로 한 사람을 말함 70%, 2인 60%) 입주가 필요하 | 계층어 사 기 남) 이호 다고 | 해당 ⁽ 가구당 마이고, 인정하 | 원평균 자산요 는 자 | 소득 |
| | | 무 | | <u>년 110%) 취취취=</u> 세대구성원 | 1 | ·산가액 이하 | | | 자동치 | :가액 | 이하 | |
| 주택 및 자산 현황 | 1. 두 디 2. 총 (' 3. 주 | 성요령 라주택서 배상으로 자산 : 22년도 탁작소유 | 및 유 대구 적용 및 자· 기준 유 및 | 교 #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격자만 신청가능 요건이 필요한 200만원 이하, 지 | 하며, 주택 입주자 자격 남동차 3,557 ¹ | 및 의 만원 | 자산현황은 무 경우 작성합니 이하) | · - 주택서 다. | 네대구성 | <u></u> 성원 전 | |
| | | | | 위와 같이 영 | 경구임대주택 공급 | 급신청서를 제 | - 데출 [*] | 합니다. | | | | |
| | | | | | ^{년 월} 고창군수 | 일 귀하 | | 신청인 | | | (2 | <u>Pl</u>) |

>> 뒷 면 에 계속

| | | 대상자 | 선정기준 | 배점 및 | 득점 (우선 | 심공급 | 중 다목_신혼부부에 적용) | |
|--|---|------------------------------|-------|---|--------|-----|--|--|
| | 구분 | 및 배점 | | | 확인내용 | 득점 | 배점기준 | |
| | | 3점 | 2점 | 1점 | | | | |
| 미성년자녀수 (타 | | 3명이상 | 2명 | 1명 | | | | |
| 고창군 연속 거 | | 3년이상 | 1년이상 | 1년미만 | | | | |
| 주택청약저축 닙 | | 24회이상 | 12회이상 | | | | | |
| 혼인기간 | | 3년이내 | 5년이내 | 7년이내 | | | | |
| | | | 배점 및 | | | | 급 중 가목_국가유공자등에 적용) | |
| | 구 : | | 71 | 배점 | 확인내용 | 득점 | 배점기준 | |
| 1. 고창 군 | 1년 | 1년 미단 이상~5년 | | 22 | | | . 고그의 함께까지 여스러서 되면 그라그에 기조한 기기으고 다 | |
| 거주기간 | | <u> 이상 ~ 10년</u> 이상 ~ 10년 | | 26 | | | ▶ 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전북 고창군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전북 고창군 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 | |
| (30점) | | 이상 ~ 15 | 년 미만 | 28 | | | 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u>재등록 이후부터 산정)</u> | |
| (_) | | 15년 이 | | 30 | | | | |
| 2. 신청자 | 마시아서 | <u>만40세 미</u> 이상 ~ 만 | - | 19 | | | 고그이 취계 조미드로파에 드게디어 이트 새녀의이오 | |
| 연령 | | <u> 이상 ~ 단</u> 이상 ~ 만(| | | |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
| (25점) | | 만60세 0 | 이상 | 25 | | | | |
| 3. 세대구성원수 | | 1~2인 | | 24 | | | | |
| (신청자포함) | | 3인 4인 | | 26 28 | | |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 |
| (30점) | 30점) <u>4인</u> 5인 이상 | | 30 | | | | | |
| (50 대) 5년 이성 30 15 (유형 3가지)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7 | | | | (유형 3가지) 13 (유형 2가지) 11 (유형 | |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유형1: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유형3: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유형5: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유형6: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유형7: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유형8: 귀환국군포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 |
| | | | | 7 | | | □유형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유형2: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유형1: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세대원 포함) □유형3: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유형5: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유형6: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유형7: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시혼부부 □유형8: 귀환국군포로 | |
| | | | | 총점 | | 점 | <u>주민센터</u> 확인자 (인) | |
| 서류편철순서 | □신청자격증빙서류[수급자,한부모,장애인,유공자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증명서 등]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기타증빙서류 □예비입주자중복선정불가 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 | | | |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최초/추가공급)

| 확인자 | 성명 | 생년월일 | |
|-------|----|------|--|
| (임차인) | 주소 | | |

본인(또는 배우자)은 고창황산 영구임대 (예비)입주자로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유형(영구임대)의 타단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 참고사항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됨의 기준은 <u>입주자모집 공고일</u>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①청약 접수일, ②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됨

년 월 일

확 인 자 (임 차 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mark>필수</mark>]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 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및 수집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 제공동의 | 개인정보 내역 | | |
|--------|---|--|--|--|
| 기본 | | - 주민등록사항(성명, 전입일, 주소 등)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 | |
| 소득 | | - 「소득세법」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 | |
| 자산 |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 |
| 기타 |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 | | |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안내

-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
-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라. 보유 및 이용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공공주택특별법」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이 용목 적 | 제공항목 |
|---|--|--|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
|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 사회보장정보원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 거주자 실태조사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
|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 입주자 만족도 조사 | 성명, 연락처, 주소 |
| 카드사.결제대행사 |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 주소, 계약자번호 |
|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등),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 성명,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
| 우정사업본부 |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 |
| 전산관리지정기관 |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민감정보 제공동의 안내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동의거부 시 계약거절 안내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 안내를 받았습니다.

6. [선택]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 안내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위 1~6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 이해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 | | | | | |
|--------------|---|----------|---------------------------------------|-----------------|-------------|-------------|--|
| 신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 청 인 | 주 소 | | | | | | |
| | | 무주택서 | 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 대한 사실 확 | 인 내용 | | |
| | 구분 | 해당 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급액 | 명의인 | 신청자와의 관계 | |
| | 시키미지기 | 예 🗆 | | 원 | [임차인] | | |
| | 임차보증금 | 아니오 🗆 | | 원 | [임차인] | | |
| | 분양권 | 예 🗆 | | 원 | [수분양자] | | |
| 기타 | ਦਿਲੰਦ | 아니오 🗆 | | 언 | [수분양자] | | |
| 자산 | 비상장주식 | 예 🗆 | | 원 | [주주(보유자)] | | |
| | 4.9.4.4.4.4.4.4.4.4.4.4.4.4.4.4.4.4.4.4 | 아니오 🗆 | | 원 | [주주(보유자)] | | |
| | 출자금/ | 예 🗆 | | 원 | [출자자] | | |
| | 출자지분 | 아니오 🗆 | | 원 | [출자자] | | |
| | 임대보증금 | 예 🗆 | | 원 | [임대인] | | |
| 부채 | 현네포 6 日 | 아니오 🗆 | | 원 | [임대인] | | |
| - -/- | 장기카드 대출 | 예 🗆 | | 원 | [차주] | | |
| | (카드론) | 아니오 🗆 | | 원 | [차주] | | |
| | | |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 | | | 상기 신고 사 | |
| 껄이 | 어위도 확인되 | 기있글 경우, |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 다 삼구일 것들 | 확인합니다. | | |
| | 별 보유에 따른 I차ㅂ주그 · 해! | | 서류 ㅏ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하저이자가 교회 | 나타어야 하 | | |
| - | | , | 기 등의 옵데지계국지 지근(: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박정말시기 표~ | 시되어야 함) | | |
| - | ¦양권 : 해당 주 ≤사일 현재까 지 | | '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 그애) | 지 분양대금 납 | 부확인원(대출금액이 | 포함된 | |
| 다. ㅂ | 상장주식 : 증 | 권사 조회내 | ,, 격,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 | 량 및 가액을 증 | 등명할 수 있는 자료 | | |
| | [자금/출자지분 !대보증금 · 해 | | 사본 ㅏ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화정일자가 ㅠ시 | 시되어야 한) | | |
| | | | 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 1-, 1 1 2) | | |
| | | | | | 신청인 : | (인) | |
| | 20 년 월 일 | | | | | | |
| | 고창군수/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 | | | | | |
| | | | | | |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앞면]

| 1. 공공임디 | 배주택 신청자 | 인적사항 | | |
|---------|---------|------|---|---------------------|
| 관 계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

주 소

| 신청자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²⁾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 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기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 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고창황산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 (1) 대표신청인 ㆍ성명 : |
|--|
| • 주민등록상주소 : |
| • 주민등록번호 : |
| • 연락처 : |
| □ (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구분 | 동의 | 동의내역 |
|-------------|----|--|
| 개인 정보 | | 상기 (1), (2)는 고창황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
| 금 정보 | |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
| + 01 | | 상기 (1), (2)는 고창황산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
| 혼인 관계 | | 증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
| | |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

년 월 일

(1) 대표신청인 : (인)

(2) 예비배우자 : (인)

고창군수/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고창황산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u>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u> 배우자 비고란의 '분리 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각 구성원의 비고란에는 신청인 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배우자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체크)하십시오

|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예정) 세대주와의 관계 | 비고 |
|---------------|-----|--------|------------------|------------------------|
| 본인 (필수기재) | | - | 본인 | |
| 배우자 (필수기재) | | - | (예시)배우자 | 신청인과 동일세대□ 분리세대□ |
| (예시)부 | | - | (예시)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 | | - |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 | | - |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년 월 일

대표신청인: (인)

예비배우자: (인)

고창군수/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